

지속가능경영규정 일부개정(안)

□ 개정이유

- 『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*』 개정에 따라 상임 임원의 의원면직 제한 조항 신설

* 주요내용[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-537(' 13.06.10)]

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,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의 감사결과에 따라 중징계 처분요구 또는 중징계 의결요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도록 개정

- 직제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명칭 수정

□ 주요내용

- 상임 임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 규정 신설
 - 제7조의2(상임 임원의 의원면직 제한) 사장은 『한국토지주택공사 정관』 제8조에 따라 사장이 임명하는 상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.
 1.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
 2.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

○ 별지 제3호 서식 『임원 직무 청렴계약서』 변경

- 제6조 제4항(변경) 임원(사장, 상임감사위원 제외)은 제4조를 위반하는 등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에 있거나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, 중징계 처분요구 또는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 의결요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이 제한된다.

지속가능경영규정 일부개정(안)

지속가능경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윤리경영위원회”를 “청렴실천특별위원회”로 한다.

제6조의2제3항제2호 중 “상임이사”를 “상임 임원”으로 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상임 임원의 의원면직 제한) 사장은 『한국토지주택공사 정관』 제8조에 따라 사장이 임명하는 상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
2.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

제8조제2항제1호 중 “본부장, 윤리경영담당부서장”을 “본부장, 부문장, 윤리경영담당부서장”으로 한다.

제9조제3호 중 “윤리실천사무국”을 “청렴실천사무국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총괄업무담당팀장”을 “총괄업무담당부장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고객만족경영담당이사가”를 “고객만족경영담당부문장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고객만족경영담당팀장을”을 “고객만족경영담당부장을”로 한다.

1. 고객만족경영담당부문장

제71조 중 “상임이사와”를 “상임 임원과”로 한다.

제73조 중 “각 팀장, 각 팀의”를 “각 부장, 각 부의”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중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위반시 제재) ④ 임원(사장, 상임감사위원 제외)은 제4조를 위반하는 등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에 있거나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, 중징계 처분요구 또는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 의결요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이 제한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3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
지속가능경영규정	지속가능경영규정
제5조(윤리헌장 및 임직원 행동강령) ① (생략) ② -----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<u>윤리경영위원회</u>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	제5조(윤리헌장 및 임직원 행동강령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<u>청렴실천특별위원회</u>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제6조의2(상임 임원 직무청렴계약 체결) ①~② (생략) ③ 직무청렴계약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. 1. ----- 2. <u>상임이사</u> : 사장 ④~⑤ (생략)	제6조의2(상임 임원 직무청렴계약 체결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직무청렴계약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. 1. ----- 2. <u>상임 임원</u> : 사장 ④~⑤ (현행과 같음)
(신설)	제7조의2(상임 임원의 의원면직 제한) <u>사장은 『한국토지주택공사 정관』 제8조에 따라 사장이 임명하는 상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.</u> 1.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2.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

현 행	개 정(안)
제8조(청렴실천특별위원회의 설치) ① (생략) ② -----위원은 아래 각 호와 같다. 1. 내부위원 : 부사장, 본부장, 윤리경영담당부서장, ----- 2. (생략) ③~④ (생략)	<u>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</u> 제8조(청렴실천특별위원회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위원은 아래 각 호와 같다. 1. 내부위원 : 부사장, 본부장, <u>부문장, 윤리경영담당부서장, -----</u> 2. (현행과 같음) ③~④ (현행과 같음)
제9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1~2. (생략) 3. <u>윤리실천사무국</u> 및 반부패실무추진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 4~7. (생략)	제9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1~2. (현행과 같음) 3. <u>청렴실천사무국</u> 및 반부패실무추진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 4~7. (현행과 같음)
(제11조)① ----- <u>총괄업무담당팀장</u> 으로 한다. ② (생략)	(제11조)① ----- <u>총괄업무담당부장</u> 으로 한다. ② (현행과 같음)
제22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<u>고객만족경영담당이사</u>	제22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<u>고객만족경영담당부문장</u>

현 행	개 정(안)
2. (생략) ② 위원장은 <u>고객만족경영담당이사</u>가 된다.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<u>고객만족경영담당팀장</u>을 간사로 둔다. 제71조(리스크관리위원회) ----- --- 위원장은 사장으로 하고, 최고리스크관리자(CRO : Chief Risk Officer)는 부사장으로 하며, 위원은 <u>상임이사</u>와 토지주택연구원장으로 구성하되-----. 제73조(각 부서 리스크관리 담당) ① ---- <u>각 팀장, 각 팀의</u> -----.	2. (현행과 같음) ② 위원장은 <u>고객만족경영담당부문장</u>이 된다.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<u>고객만족경영담당부장</u>을 간사로 둔다. 제71조(리스크관리위원회) ----- --- 위원장은 사장으로 하고, 최고리스크관리자(CRO : Chief Risk Officer)는 부사장으로 하며, 위원은 <u>상임 임원</u>과 토지주택연구원장으로 구성하되-----. 제73조(각 부서 리스크관리 담당) ① ---- <u>각 부장, 각 부의</u> -----.